#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7

발의연월일: 2021. 6. 16.

발 의 자:이용우·오영환·노웅래

전재수・신영대・고영인

윤준병 • 민형배 • 홍정민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 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 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                                      |
|       | 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br>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br>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br>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 |
|       | 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br>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br>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                 |
|       |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br>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br>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br>다.            |